

의안번호	제305호
의결연월일	2021. 3. 17.

-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2. 24. 김봉현, 김만겸, 정완진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3. 17.

제26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의원 : 정 완 진]

가. 제안이유

-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군수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
- 처우 개선 사업 등(안 제5조)
-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(안 제6조)
-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(안 제7조)
-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[전문위원 : 박 우 현]

- 본 조례안은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충청남도과 천안 등 도내 5개 시·군(전국 5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)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으며,
- 조례의 내용이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,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 음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사 결과

○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